

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

지침 · 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 · 현행 규정

제정 2020. 9. 7. · 시행 2020. 9. 1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41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3:15:57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)

실험동물연구센터(이하 “동물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실험동물의 반·출입 및 사육관리
2.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
3. 감염사고처리
4. 동물실험 교육
5. 실험동물 연구지원
6. 형질전환동물의 제작 및 표현형 분석

제3조(센터장)

① 동물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나열된 부서의 장이 그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조직)

① 동물센터에 동물실험관리지원부와 실험동물연구부, 행정실을 둘 수 있다.

②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고,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부와 행정실의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동물실험관리지원부는 동물실험시설의 점검과 관리, 실험동물의 반·출입, 사육관리, 실험동물 폐기, 관련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, 감염사고 처리, 동물실험교육 등을 담당한다.
2. 실험동물연구부는 실험동물의 품질관리와 형질전환동물의 제작, 표현형 분석, 각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한다.
3. 행정실은 서무, 회계, 관리 및 부서의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등)

① 교내 동물실험시설의 지원과 효율적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부처장과 기획 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원장과 약학대학장, 과학기술대학장,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 센터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동물실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, 점검에 관한 사항
2. 실험동물의 반·출입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
3.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
4. 감염사고처리에 관한 사항
5.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6. 연구센터 운영지침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사항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연구센터의 자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소위원회의 운영

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실험동물의 반·출입 및 사육관리)

- ① 동물실험실시자는 센터 내 공간 사용신청서(서식 1), 실험동물 구입 및 반출·입신청서(서식 2)를 연구센터에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험동물을 반출·입한다.
- ② 각 동물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서와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실험하고 동물을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동물센터의 모든 시설·설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.

제7조(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)

- ① 센터장은 각 실험동물책임자들이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실험동물과 관련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도록 관리·감독한다.
- ② 각 학과 동물실험시설의 책임자는 실험동물관리지침에 의거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을 분별 수집하여 그 처리를 센터장에 의뢰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.

제8조(감염사고처리)

- ①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센터장은 감염사고의 경위 또는 사후처리 결과를 검토한 사고내용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9조(동물실험 교육)

- ① 센터장은 동물실험 교육을 주관한다.
- ② 교내의 동물실험 책임자와 동물실험실시자, 그 보조자는 동물실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동물실험시설의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(부담금)

- ① 센터장은 동물센터의 시설 이용 비용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,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 등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해당 동물실험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각 비용은 별표 1과 같고, 비용과 부과금액 등의 설정과 변경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- ③ 센터장은 이용 비용 또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실험책임자 및 실험실시자의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해당 실험동물을 폐기할 수 있다.

제11조(자문위원)

동물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

그 밖에 동물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·서식

· 별표 1. 사용자 이용규칙 및 이용수수료_202100913.hwp

별표·서식 파일은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세요.